상조회 회칙

제정 : 1995.05.02
개정 : 1998.05.01
개정 : 1999.10.18
개정 : 2004.03.01
개정 : 2008.12.17
개정 : 2011.11.22
개정 : 2017.05.01
개정 : 2020.09.01
개정 : 2021.12.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원대학교 상조회”(이하 “본 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개정 1998. 05. 01., 1999, 10. 18., 2008. 12. 17., 2011. 11. 22., 2021. 12. 01>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애경사에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1. 12. 01.>

1. 본 회원의 경조시 경조금 지급
2. 본 회원의 퇴직위로금 지급
3. 본 회원의 수·화재에 대한 위문금 지급
4. 근속포상자에 대한 공로금(기념품) 지급
5. 본 회원의 친목도모와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초빙교원)과 직원(일반직, 기술직, 계약직)으로 조직한다. 다만, 학교법인 및 산학협력단 직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7. 05. 01., 2021. 12. 01.>

제3장 임 원

제5조(구성)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원을 둔다. <개정 2021. 12. 01.>

1. 회　　장 1인
2. 운영위원장 1인(운영위원에 포함)
3. 운 영 위 원 5인(교원 3인, 일반직 2인)
4. 감　　사 2인
5. 총　　무 1인

제6조(임원의 구성) ① 회장은 본 대학교의 총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장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총무는 운영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는 직무를 대신한다.

제8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12. 01.>

② 운영위원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제반업무를 전결 집행하고, 반기마다 운영상황을 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총무는 운영위원장의 명을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정리하고 처리한다. <개정 2021. 12. 01.>

제9조(감사) ① 감사는 회장이 위촉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으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감사는 본 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사하고, 필요시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감사결과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발견되었을 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11조(회의) 본 회의 주요사항 결정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2. 01.>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 12. 01.>
1. 규정의 변경
2. 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
3. 운영위원 및 감사의 위촉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회의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제3항에 의한 정기총회의 개최가 학사운영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전체에 대한 서면 회람을 통해 중요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01.>

제13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제9조제3항에 의하여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었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01.>

제14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총무 및 필요시 회장이 지명하는 회원이 구성원이 되고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및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가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장 회 계

제15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16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적립금 부족 시에는 회원의 공동부담으로 충당한다.

제17조(회비) ① 본 회의 회비는 매월 1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4. 03. 01., 2017. 05. 01.>
② 회비는 매월 보수지급일에 일괄 공제한다.
③ 신규 가입회원은 입회비 50,000원을 납부하되 일시납이 어려울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8조(비치서류) 본 회는 다음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한다.

1. 상조회 회칙
2. 상조회원 명부
3. 수입 및 지출결의서 철
4. 금전출납부
5. 기타 수입·지출에 관한 서류

제19조(예·결산보고) 본 회의 예산 및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결산에 있어서는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정기감사) 정기감사는 매년 2월 중에 실시한다. <개정 2021. 12. 01.>

제21조(회비관리) 회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적립하되 본회 명의의 은행구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회원대출) 본 회의 회원가입년수 2년 이상인 회원에 한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금액을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01.>

1. 대출금액 : 100만원 한도 이내로 하며 회원 1인 연 1회에 한한다.
2. 대출금리 : 월 1%로 한다.
3. 원금 및 이자의 상환 : 대여 받은 다음달부터 12개월 동안 봉급에서 공제한다.
4. 세부시행에 관한 문제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경 조 금

제23조(경조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경조금은 '별표 1' 에 의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년수 1년 미만의 교직원은 지급 기준액의 1/2만 지급(전달)한다. <개정 2021. 12. 01.>

제24조(경조금의 청구) 본 회원이 경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경조사항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위원장(총무)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장은 접수받은 즉시 기준에 따라 지급(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금 부족시에는 다음 월회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 12. 01.>

제25조(퇴직위로금) 본 회의 회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할 시는 '별표 1' 의 기준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제26조(포상) 본 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정년으로 퇴직하는 자
2. 본 회에 공로가 있는 자
3. 회원 상호간의 친목에 특히 공로가 있는 자

제27조(업무수당) 본 회에 종사하는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상조회 업무 수행을 위한 교통비 등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필요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전에 수혜 받은 회원은 본 개정회칙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 본교의 교명을 대원전문대학에서 대원공과대학으로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1999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 본교의 교명을 대원공과대학에서 대원과학대학으로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회비인상) 월 회비를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 본교의 교명을 대원과학대학에서 대원대학으로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 (교명변경)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애경사 관련 지급기준 및 지급액

종 별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축의금 (가입1년 미만 50%지급)	1. 회원결혼 2. 회원회갑 3. 부모회갑 4. 자녀결혼	300,000원 300,000원 200,000원 200,000원	1. 본인 결혼에 있어서는 택일 후 결혼을 위해 결혼 3개월 이내 퇴직할 경우에 한하여 축의금 지급 2. 부모의 회갑시 축의금은(장인, 장모 포함)2명 이내로 한다. 3. 배우자의 회갑의 경우 본인 회갑과 동일 금액
조의금	1. 회원사망 2. 배우자사망 3. 부모사망 4. 자녀 사망 5. 장인, 장모사망	1,000,000원 500,000원 500,000원 500,000원 300,000원	1. 자녀 사망의 경우 만 7세 이상 2. 근조기 게양
근속포상금	1. 10년 근속 2. 20년 근속 3. 30년 근속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개정 2020.9.1.>
위문금	회원입원 1주이상~3주미만	100,000원	
	회원 및 직계가족입원 3주이상	200,000원	정도에 따라 운영위원회 추가 지급 결정
재해위로금	회원 풍수재해 및 기타재해	운영위원회 결정	
전별금 (퇴직위로금)	회원 전출 및 퇴직	불입금총액에서 수혜금총액을 제한 나머지의 5할 지급	재직 기간이 정해진 회원은 수혜금이 전혀 없을 경우, 본회의 가입비를 추가로 지급